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사업개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22.1.1.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 지원금액은 1일당 최대 5만원(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 5만원, 1주 40시간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2.3.21.(월)~'22.12.16.(금)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가능 (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성남고용노동지청 별관) 4층 기업지원팀

[필요서류-공통]

-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추가필요서류] -각 사유별

-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지문자(출력본) 등
-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휴원증명서, 휴원통지서, 가정통신문 등
-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교사확인서 등
-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에서 발급), 격리통지문자(출력본) 등
-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지급절차]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또는 부지급) 통보가 이루어짐
-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예)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성남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31-739-4902